



배포 일시	2022. 8. 29.(월)	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3835)
		담당자	사무관	허철혁 (044-201-3919)
	자동차운영 보험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	장문석 (044-201-3956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##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·광고 유형 구체화,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 등록원부 기재 29일부터 「자동차관리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('22.6.10)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\* 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(40일간)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\* 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, 「자동차등록령」, 「자동차등록규칙」

<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('22.6.10 개정, '22.12.11 시행) >

- ◎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·광고 유형 규정
- ◎ 중고차 인터넷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
- ◎ 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
<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(안) ('22.7 발표) >

- ◎ 전기차 배터리 리스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 개선

□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·과장 광고,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등을 관리하고,

○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,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,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함이 주요 개정 목적이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**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·광고 유형 구체화**(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)

-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·광고 유형을 ①거래대상이 될 수 없거나, ②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, ③거래조건 등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·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구체화 한다.

② **중고차 인터넷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 규정**

(시행령 제14조의 6 신설 등)

-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을 공공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,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단체로 명시한다.

③ **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운영**(시행령 제9조의6 개정 등)

- ‘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’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위원회에 2개 분과위원회(제작결함분과위원회, 중재분과위원회)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.
- 앞으로는,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(리콜) 등과 관련한 사항은 ‘제작결함분과위원회’에서, 자동차 교환·환불 중재 업무는 ‘중재분과위원회’에서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.

④ **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포함**

(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개정 등)

- 차량과 구분하여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어,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

⑤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
(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개정 등)

- 자동차제작·수입자가 시정조치(리콜)계획을 신문에 공고할 때 서울 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하고,
  - 시정조치(리콜) 전용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제작·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.
-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(40일간)이고 관계부처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'22년 12월 10일 이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"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"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- \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/ 팩스: 044-201-5584